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6일 04시 32분



# 목차

목차	2
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	3
지원대상	3
지원내용	3
구비서류	3

신생아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 지원	영양제 정장제 지원	<b>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</b>
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	기저귀 조제분유 지원	영유아 건강검진
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		

## 지원대상

- 미숙아 란 체중 2.5Kg 미만 및 제태 기간 37주 미만 출생아
  -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자 :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(NICU)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(일반신생아실 입원시 대상 제외)
- 선천성이상아란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「Q」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

## 지원내용

-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
- 지원제외 : 재입원,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, 제증명서 발급비용, 병실 입원료, 보호자 식대,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 (체온계 등), 예방접종비 등 ※ 예방접종비의 경우 치료목적이 포함된 경우 의료기관 확인 후 지원 가능

※ 단,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수 없음(선천성이상아 : 최고지급액 500만원)

출생시 체중	2.0kg~2.5kg미만 37주미만	1.5kg~2.0kg미만	1kg~1.5kg미만	1kg미만
미숙아	3백만원	4백만원	7백만원	10백만원
선천성이상아	5백만원			
중복지원최고금액	8백만원	9백만원	12백만원	15백만원

## 구비서류

- 1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
- 2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
-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(미숙아)
- 4 진단서(질병명,질병코드 포함), 입·퇴원확인서 각 1부 (선천성이상아)
- 5 통장사본 1부
- 6 주민등록등본 1부



---

**COPYRIGHT © YEOSU. ALL RIGHTS RESERVED.**

# Yeosu Web Contents

